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2024. 02.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294호로 2024년 2월 8일 임헌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현행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청년 행정체험단 사업으로 개정하고, 사업 대상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여 행정기관 직무 경험을 통해 관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행정체험단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의료급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4. 2. 13.~ 2. 18.):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비(非) 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참고하여 영등포구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자격을 대학생에서 비(非) 대학생까지 아우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대상)에서** “청년행정체험단” 대상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의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 규정함.

○ **검토 결과**

-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2008년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 일자리 확대 사업의 하나로 대학생들에게 취업 전 행정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등록금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음. 우리 구(區)에서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제정. 2019.04.11)를 제정[1] 하여 시행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우리 구(區)는 동조례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지원할 수

1) 영등포구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관련 조례 제정 이전에는 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있는 대상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4호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한정하여 사업을 운영해 왔음.

- 대부분의 지자체 청년행정인턴 모집[2]에서,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비(非) 대학생이 배제됨에 따라 대학생 이상의 학력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3] 및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4]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학력에 의한 차별은 국민 기본권인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함.

- 이를 참고하여 우리 구(區)에서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하겠음.

- 한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는 “청년”을 선발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은 청년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원 대상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2)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68% ‘대학생’만 선발하여 행정체험인턴사업 추진 중(한국인권진흥원, 2023년 기준)

3)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지방자치단체 행정인턴 모집 시 비(非) 대학생 차별」 사건에 대해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음. (2023.4.18.)

4)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학력에 의한 차별」 의안에 대해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 결정을 원안 가결한 바 있음. (2023.11.17.)

참 고 자 료

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2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생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생략)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